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194
----------	-------

발의연월일 : 2025. 8. 14.

발의자 : 추경호 · 김상훈 · 이달희
권성동 · 김정재 · 서지영
김위상 · 권영진 · 박대출
안철수 · 김은혜 · 김미애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를 사용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를 두고 있으며,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의 경우에는 4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이용객의 지속적인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전통시장 사용금액의 소득공제율을 상향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사업자에게 발급건수에 따라 일정액을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있음. 그러나 특례의 일몰기한이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현금영수증 활성화와 세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는 동 제도의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50%로 10%p 상향하며,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26조의2 및 제126조의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100분의 40(2023년 4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전통시장사용분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100분의 50”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다목 중 “큰 경우”를 “크고 신용카드사용분, 직불카드등사용분과 대중교통이용분을 합친 금액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최저사용금액이 신용카드사용분, 직불카드등사용분과 대중교

통이용분을 합친 금액보다 큰 경우: 다음 구분에 따른 금액

1)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신용카드 사용분 × 100분의 15 + (직불카드등사용분 + 문화체육사용분) × 100분의 30 + 대중교통이용분 × 100분의 40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분 - 직불카드등사용분 - 문화체육사용분 - 대중교통이용분) × 100분의 50

2)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용카드사용분 × 100분의 15 + 직불카드등사용분 × 100분의 30

+ 대중교통이용분 × 100분의 40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분 - 직불카드등사용분 - 대중교통이용분) × 100분의 50

제126조의3제2항 전단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2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소득세를 결정하거나 연말정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사업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금액의 합계액(이하 이 항에서 “전통시장사용분”이라 한다) × 100분의 40(2023년 4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전통시장사용분의 경우에는 100분의 50)

2. ~ 5. (생 략)

6.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다만, 2023년 1월 1일부
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사
용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
은 별표에 따라 계산한 금액
으로 한다.

가. · 나. (생 략)

다. 최저사용금액이 신용카드
사용분과 직불카드등 사용
분을 합친 금액보다 큰 경
우: 다음 구분에 따른 금
액

2. ~ 5. (현행과 같음)

6. -----

----- . -----

----- . -----

가. · 나. (현행과 같음)

1) · 2) (생략)

<신설>

1) · 2) (현행과 같음)

라. 최저사용금액이 신용카드

사용분, 직불카드등사용분

과 대중교통이용분을 합친

금액보다 큰 경우: 다음

구분에 따른 금액

1)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

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

우: 신용카드사용분 × 100

분의 15 + (직불카드등사

용분 + 문화체육사용분) ×

100분의 30 + 대중교통이

용분 × 100분의 40 + (최

저사용금액 - 신용카드사

용분 - 직불카드등사용분

- 문화체육사용분 - 대중

교통이용분) × 100분의 50

2)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

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

는 경우: 신용카드사용분

× 100분의 15 + 직불카드

등사용분 × 100분의 30 +

대중교통이용분 × 100분의

40 + (최저사용금액 - 신

용카드사용분 - 직불카드

